

2023년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총 회

-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18:30
- 장소 : 천안축구센터 중세미나실(2층)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총회 자료집 목차

총회 식순	1
천안아산경실련 창립취지문	3
심의안건	5
제1호 천안아산경실련 규약(안)	7
제2호 임원(안) 선출	15
제3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17
제4호 기타안건	25
경실련 회원의 다짐	27
MEMO	28

총회 식순

의장 : 김승연 비상대책위원장

사회 : 김효실 비상대책위원

1. 성원보고사회자
2. 개회선언의 장
3. 임시의장 인사 및 안전 상정의 장
4. 부의 안전 심의의 장
제1호 규약 심의 건
제2호 임원 선출의 건
 - 대표 선출의 건
 - 감사 선출의 건
 - 집행위원 선출의 건제3호 2023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의 건
제4호 기타안전
5. 대표 취임 인사말한광수 신동현 윤권중
6. 경실련 회원의 다짐다함께
7. 폐회선언의 장

창립 취지문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사회의 열망과 기대를 한데 모아 미래지향적 실사구시의 가치를 내걸고 천안아산 경실련을 창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는 국민 간의 균열과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 안정 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인 윤리 전반을 문란케 하여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양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양심적인 시민 중소기업인 지식인 서민계층, 모든 사람들의 선한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 조직화된 국민적 행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경제정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적을 이뤘던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사회적 분배의 기적을 성취해서 일한만큼 대접받고 소외와 배제가 없는 온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실련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경실련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 발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힘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작은 의지와 작은 힘을 크게 모아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사회도 시민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이러한 경실련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인간애가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과 사명의식을 지닌 천안아산 지역의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불의에 대응하는 순수한 시민운동단체로서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의 수많은 과제들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것이며, 격변기에 있는 우리 사회를 다수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민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된 시민토론편찬회를 활성화 하여 합리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고 참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천안아산 경실련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를 통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에 부끄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심의안건

제1호. 천안아산경실련 규약(안) 심의 건

제2호. 임원 선출의 건

제3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안)심의 건

제4호. 기타 안건

제1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규약(안) 승인의 건

표준규약·제정(안) 대조표

표준규약	제정(안)
<p>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 선전 5.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 시민행동 7.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p>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활동 5. 시민권익보호 및 증진 활동 6. 정책개발 7. 시민행동 8.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p>제9조 [징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차) ① 회원 및 상근활동가는 해당 지부경실련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임원 및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해당 지부경실련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직위원회의 심의 후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자체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p>2. 파면이나 제명된 자는 2년 내에 회원가입 및 복적할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여 해당조직의 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9조 [징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차) ① 회원 및 상근 활동가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앙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임원 및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집행위원회의는 조직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요청하고 중앙 조직위원회의 심의 후 중앙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조직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자체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집행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p>2. 파면이나 제명된 자는 2년 내에 회원가입 및 복적할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여 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중앙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 [사무처(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에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4. (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해당 지역경실련 추천과 조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동의로 해당 지부조직의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5. (급여) 지부경실련은 매년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 제6장이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p>제16조 [사무처(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에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3.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4. (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집행위원회 추천과 중앙 조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로 해당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5. (급여) 매년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 제6장이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p>제5조 [자격 및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②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p>제5조 [자격 및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지부” 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경실련 천안아산지부” 또는 “천안아산경실련” 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천안 혹은 아산 지역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4. 홍보활동
5. 시민권익보호 및 증진활동
6. 정책개발
7. 시민행동
8.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 ① (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 ② (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 ③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집행위원회 동의 거처 특별회원이 된다.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 ②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③ 회비를 납부 할 의무
- ④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 ① (절차)
 - 1. 회원 및 상근 활동가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앙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 2. 임원 및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집행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요청하고 중앙조직위원회의 심의 후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 3.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조직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자체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집행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파면이나 제명된 자는 2년 내에 회원가입 및 복직 할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여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조 직

제11조 [총회]

- ① (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② (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③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권한)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3.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제12조 [집행위원회]

- ①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 ② (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소집) 집행위원회는 월에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④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2.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4.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5. 각 위원회의 장 임면 및 사무국(처)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6.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⑤ (의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국)]

- ①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국)을 설치하고 사무처(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② 사무처(국) 내부의 부서 설치에 사무처(국)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 ③ 사무처(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 ④ (인사) 사무책임자(사무국장, 사무처장)는 집행위원회 추천과 중앙 조직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중앙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로 집행위원회에서 임면한다.
- ⑤ (급여) 매년 <경실련 운동의 통합성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 제6장이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 ①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②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③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 ①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③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기구]

- ①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②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 ③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 ① 이 연합의 도덕적, 운동적 관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등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②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임기]

- ① **(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처(국)장은 3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 ② **(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 연임으로 제한한다. 단 연임자가 임기종료된 경우 조직위원회의 심사 후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
- ③ **(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임원의 결격)**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4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규약준수의무] 이 연합의 모든 지역은 표준규약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6조[의무], 제7조[권리], 제11조[총회], 제12조[집행위원회], 제17조[조직위원회], 제18조[정책위원회], 제21조[임기]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규약개정] 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준칙] 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 지역경실련협의회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2월 8일

1. 대표 추천(안) (임기 : 2023. 2. 8. ~ 2025. 2. 7.)

성명		주요 활동	비고
	윤권종 (1968生)	글로벌소프트파워연구소 소장 前파랑새등지 원장 前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前천안아산경실련 정책위원장 前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장	
	신동현 (1971生)	아름다운동행요양원 원장 보금자리장기요양센터 센터장 前천안아산경실련 조직위원장 前천안아산경실련 복지분과위원장 前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	
	한광수 (1966生)	인터넷언론 뉴스파고 발행인 한광수행정사 대표 前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 前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 추진위원	

2. 감사 추천(안) (임기 : 2023. 2. 8. ~ 2025. 2. 7.)

연번	성명	소속	주요 활동
1	장재식	세무사	전 감사
2	하종율	강동대 교수	전 집행위원

3. 집행위원 추천(안) (임기 : 2023. 2. 8. ~ 2025. 2. 7.)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김효실	순천향대학교 교수	집행위원장
2	김태명	자영업	
3	이승열	건강보험공단	
4	금명기	자영업	
5	안주형	(주)원담 대표	
6	정구봉	설화수 지사장	
7	한형규	나사렛대학교 교수	
8	최장은	(주)반도산업 대표	
9	신명호	(주)하나건설 대표	조직위원장
10	맹주완	아산학연구소	
11	신인환	지역문화답사 다락	
12	홍남화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13	김현경	아산시일자리센터	
14	방원규	아산텔레콤 대표	
15	윤주만	전감사	
16	이장용	자영업	
17	이수희	전 사무국장	정책위원장
18	김재천	세무사	
19	김병진	공인중개사	
20	임윤희	자영업	
21	전오진	전 사무국장	
22	김지성	자영업	

주요 임원 현황 보고

성명	직책	주요활동	임기
김효실	집행위원장	전정책위원장	2년
이수희	정책위원장	전 사무국장	2년
신명호	조직위원장	전집행위원	2년
전오진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	3년

○ 사업계획 요약

핵심	① 지방권력 감시와 견제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아산시 단체장 핵심공약 이행 점검 활동 • 지방의회 공약 이행 평가
	② 지방의원 농지보유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아산시 지방의원 농지보유 현황 실태조사(년1회) • 농지정책제도 개선 토론회(1회)
일반	① (지역현안) 대중교통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회계 투명성 확보 운동 • 택시운송원가 전가 행위 감시 운동
	② (회원사업)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수용 및 보상 시민 강좌 • 소상공인 대상 기초 세무 강좌 • 지역의제 만들기 시민 교육 • 임원 워크숍 (상·하반기 2회) • 경실련 정기 산행, 미술치료 동호회, 공연 기획 등

① 핵심사업

□ 지방 권력 감시와 견제 운동

1) 목적

- 시민의 편에 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행정 구현 및
- 예산 낭비 방지와 청렴한 행정 및 의정 구현을 위한 상시적 감시와 견제활동

2) 사업 내용

- ① 단체장(시장)의 핵심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및 감시 활동(연1회)
- ② 주요 정책사업의 타당성 투명성 조사(수시)-사안 발생시마다
- ③ 기초의회 의원의 핵심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및 감사 활동(연1회)

3) 기대 효과

- 시민 중심의 천안 아산 복지 행정의 추구에 기여
- 시민 혈세 낭비 방지와 투명행정 추구에 기여
- 단체장의 시민과의 약속 이행의 정직한 행정 구현에 기여

□ 지역 지방의원 농지보유실태 및 농지정책 제도 개선

1) 목적

- 선출직 공무원의 농지보유실태를 매년 변동추이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역농지정책의 제도 개선의 계기 마련

2) 사업내용

- ① 천안시와 아산시 의원 농지 보유실태조사 발표(중앙연계)
- ② 지역 농지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운동
- ③ 지역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농민회 등 연대)

3) 효과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제도 도입의 계기 마련
- 절대농지 및 우량농지의 보전 및 농업주권 확보

□ 일반사업

□ 대중교통 투명성 확보 운동 전개

1) 목적

- 운송업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 방지
-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시민 안전 보장
- 택시 운송비용 전가 행태 실태 조사

2) 사업 내용

- ① 국가보조금의 회계처리 투명화 운동
 - 국가보조금 지원 및 사용 감시활동(정보공개 청구 및 회계 감사결과 분석)

- ② 시내버스 안전 운행 상황 점검
 - 시내버스 정비의 적정화(부품의 정품사용 및 재생 타이어 사용 방지 활동)
- ③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④ 택시 운송비용 전가 실태조사

3) 기대효과

-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중교통 시스템 확보
- 시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 방지

□ 회원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1. 토지 수용 및 보상 관련 시민 교육

1) 목적

- 최근 지역사회의 대규모 공공 및 민간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 및 토지 보상 절차를 이해하고, 법률에 의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 및 연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교육 사업 실시. (천안시 조성중인 산업단지 10곳)

2) 사업내용

- ① 시민 강좌는 관련 전문가 집단(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강의와 동시에 개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형식으로 개발.
- ② 주요 강좌 내용은 “공공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이해”,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 “, ” 토지소유주의 토지수용대응방안 “, ” 토지 수용개선방안 및 연대 대책 “ 등 내용으로 교육 실시함.

〈주요 내용〉

회차	내용
1	공공사업과 토지보상관련법 (산업단지, 도시개발 절차, 보상관련법 해설)
2	토지보상 및 수용 절차의 이해 (공공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 절차, 토지수용절차 이해)
3	토지보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지소유자의 보상 대응방안)
4	판례로 본 토지보상사례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판례 소개 및 대응방안)
5	토지정의를 위한 연대 (산업단지개발 및 도시개발과정에서 갈등 대응 및 연대활동사례)

2) 개대효과

- 토지수용 및 보상에서 토지소유자의 대응 및 대책 방안 마련
- 공공 및 민간개발에서 강제수용권을 제한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의 분위기 확산

2.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교육

1) 목적

- 소상공인의 세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역량 강화로 절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복잡한 세무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세무실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배양

2) 사업 내용

- ① 대상 : 회원 및 관심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 ② 교육내용

회차	교육내용
1	사업자의 세금 신고 어떻게 할까?
2	지출증빙관리는 어떻게 할까?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세무관련제도 이해
4	홈택스 활용하기
5	부가세 신고 스스로 하기

3)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의 기초 세무실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절세 및 경영 효율성 향상
- 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 세무 실무 지식 향상에 기여

3. 지역의제 찾기 및 좋은 공약 만들기 시민 교육 사업

1) 목적

- 좋은 정책공약 만들기 사업은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선심공약·금권 등을 통하여 당선되려는 선거 관행을 극복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본위의 선거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
- 지방선거의 경우 국가선거에 비하여 정책수립이나 예산집행이 특정 시·도나 시·군·구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춤형 매니페스토 공약의 효

과를 좀 더 빨리 실천하고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매니페스토 지원 정착을 위한 제도화와 관련자의 매니페스토 정책 만들기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내용

① 로컬 매니페스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인수위원회 조례 연계 작업)

○ 주요골자

가. 공약이행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명시

나.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시기 및 방법 명시

다.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방법 및 시기 명료화

라.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 협조와 지원

② 좋은 정책공약 만들기 워크숍 개최

- 목적 :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제 찾기 및 정책공약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주요 내용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00 ~ 15:00(2h)	매니페스토 이해 지역의제 찾기	
15:00 ~ 18:00(3h)	정책공약작성법 (의정활동계획서)	퍼실리테이션 기법 활용

3) 효과

- 매니페스토형 정책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평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방 흑색선전을 추방하여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아닌 포지티브 선거운동이 정착될 수 있음.
-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건강한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음.

4. 회원 참여 프로그램 사업

1) 목적

- 경실련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 경실련 회원의 경제 정의 의식 증진 공감대 조성

2) 사업내용

- ① 경실련 회원 산행(월 1회, 참가자 중심)
- ② 경실련 회원 온 오프라인 미술 치료 및 교양 강좌 전개
- ③ 임원 워크숍 개최 (2회)
 - 목적 : 임원간 경실련운동에 대한 비전과 정체성 공유와 유대관계 증진
 - 내용 : 연1회 이상 워크숍 개최(상반기) / 타 경실련 벤치마킹 방문 기회 마련

구분	내용	비고
1차	- 경실련의 철학과 가치 - 임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	1박2일
2차	- 타 경실련 활동 벤치마킹	1일

3) 기대 효과

- 회원의 단합 및 의식 공감대 조성 및 자발적 회원 확대 기여

2023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안)

2023년도 수입 예산

항목	세목	수입액(원)	비고
이월수입	전년도 이월금	4,000,000	
회비수입	소계	25,200,000	
	일반회비	일반회원 15,600,000 임원분담금 9,600,000	
	특별회비		
후원수입	소계	10,000,000	
	일반후원금	0	
	후원회	10,000,000	
사업수입	소계	8,000,000	
	교육사업	5,000,000	
	기타사업	3,000,000	
기타수입	이자 등	50,000	
합계		47,600,000	

○ 2023년도 지출예산

항목	세목	지출액(원)	비고
I. 운영비	계	4,880,000	
일반운영비	소 계	2,000,000	
	회의비	1,300,000	
	비품구입비	200,000	
	경조사비	200,000	
	여비교통비	200,000	
	기타(수수료등)	100,000	
기관운영비	소 계	2,880,000	
	임차료	2,400,000	200,000원 × 12월
	공공요금(통신)	480,000	
II. 인건비	계	28,520,000	
	급여	24,120,000	2,010,000원 × 12월
	복리후생(4대보험)	2,000,000	
	퇴직적립금	2,400,000	
III. 사업비	계	7,500,000	
사업비	교육사업비	5,000,000	
	회원사업비	2,000,000	
	연대사업비	500,000	
	기타사업비	0	
차년도 이월	이월금	6,700,000	
합계		47,600,000	

경실련 회원의 다짐

- ▶ 모든 사회적 억압, 차별, 불의와 빈곤을 추방하여 자유와 정의가 충만하며,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우리는 지향한다.
- ▷ 모두 개인, 집단, 인종, 민족과 국가 간에 평화와 우애가 충만하며,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보호되며,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우리는 추구한다.
- ▶ 우리는 단지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회만이 아니라 바르고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며, 단지 제도 개선운동만이 아니라, 의식과 윤리를 바르게 하는 정신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 ▷ 시민단체는 정부와 시장과 더불어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는 세 주역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경실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선다.
- ▶ 우리는 항상 시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 ▷ 우리 특정한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서 공공선을 추구하고 불편부당한 정론을 주장한다.
- ▶ 우리는 비난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찬 머리와 더운 가슴으로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 ▷ 우리는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하여 경실련을 이용하지 않으며, 각자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다.
- ▶ 우리는 사회갈등을 상호 파멸적인 적대적 투쟁이 아니라 상생의 갈등으로 승화시키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 ▷ 경실련의 한 가족인 회원, 자원봉사자, 임원, 상근활동가는 모두 평생의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MEMO]